

〈특집: 민법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고찰〉

기획의 글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김재형
증여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최봉경
대상청구권 -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법론 -	김형석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권영준

우리 민법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정 민법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민법의 기초자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 끝에 독자적인 민법전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후 최근까지 22차례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주로 가족법 부분이 개정되었을 뿐이고 재산법 부분의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법 재산편은 50여 년 동안 최초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민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학설과 판례가 축적되어가면서 제정 민법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민법 제정 당시에 참고했던 외국의 민법들도 대폭 개정되었거나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모범 또는 참고가 될 수 있는 입법례나 모델법도 많아졌다.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유엔통일매매법)이나 유럽계약법원칙 등 각종 모델법은 여러 나라에서 민법개정에 관한 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법개정을 위한 내부적 동인과 외부적 동인이 짝을 띄우고 점차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IMF에 의한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인 1999년 2월 법무부 산하 민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출범하여 2004년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09년 2월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가 다시 출범하여 2014년 2월까지 새로운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04년 민법개정안을 토대로 출발한 것이지만, 새로운 개정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 중에서 행위능력과 성년후견에 관한 부분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유치권이나 여행계약에 관한 개정안 등은 부분적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나머지는 수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민법개정은 우리 학계의 오랜 염원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공동연구는 민법 재산편 전분야에 걸쳐 이루어진 민법개정안 가운데 특히 채권법에 관한 몇 가지 주요 쟁점에 관하여 민법개정작업에 참여한 연구진들의 경험을 살려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개정작업에 관한 분석과 비판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김재형), “증여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최봉경), “대상청구권 -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법론 -”(김형석),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권영준)로 구성되어 있다. 4편의 논문 모두 민법개정작업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논문의 결과가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논의 내용은 앞으로의 입법론이나 해석론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연구진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로 2014년 2월 27일(목) 오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각자 분담한 부분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서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다. 민법개정안에 관한 주요 쟁점들의 의미와 내용을 다양한 시각에서 돌이켜보는 것은 좀 더 나은 민법을 갖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 이후에 개정내용의 의미를 밝히고 적용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좀 더 넓고 깊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김재형